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병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3. 08. 25.

발의의원 : 하병문, 김태우,
박소영, 박우근,
박종필, 박창석,
육정미, 윤영애,
이영애, 이태순,
임인환, 하중환,
황순자 의원
(13명)

1. 제안(개정) 이유

- 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으로 인해 상위법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의 금연 구역 지정 규정(공동주택, 유치원, 어린이집)을 정비하고,
- 나. 「도로교통법」 제2조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여 시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규정(제4조제1항제3호)
- 나.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시를 규정(제4조제2항)
- 다. 금연구역을 지정·변경·해제 시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제4조제3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 관계부서와 협의 필요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를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조제4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p> <p>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p> <p>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신설></p> <p>3. 4. (생략)</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삭제></p> <p>① -----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p> <p>4.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5.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6. ~ 8. (생략)

9. 주유소

10. (생략)

<신설>

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④ 누구든지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제8조(금연지도원) ①·② (생략)

③ 금연지도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생략)

<삭제>

6. ~ 8. (현행과 같음)

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0.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

----- 이 경우, 시장은 변경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 제1항-----

-----.

제8조(금연지도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④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 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생략)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생략)

3.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다른 주유소 또는 일반판매소(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반판매소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부터 휘발유·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완공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설치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